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324 제출연월일: 2024. 7. 3. 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하고,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·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9호의2 중 "홍보"를 "홍보, 사고 예방 신고 장려"로 한다.

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3.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 이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설치 · 운영

제55조제2항 중 "긴급구조지휘대"를 "긴급구조현장지휘대"로 한다. 제66조의13을 제66조의14로 하고, 제8장에 제6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13(안전 신고) 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 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험요인 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 관을 말한다)에 신고(이하 "안전신고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간편하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 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 포털의 구축·운영을 위한 제도적·기술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.

제7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4조의2제3항 중 "권한 없이 다른"을 "다른"으로, "제공하는"을 "권한 없이 제공하는"으로 한다.

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"영상정보처리기기"를 "영상정보처리기기 (이하 "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한다)"로 한다.

제7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4조의5(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 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 리기기 통합관제센터(이하 "통합관제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이 개별적으

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·대비·대응을 위하여 연계·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.

- ③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,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•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6조의4제4항 중 "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"을 "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는"으로 한다.

제78조의2제1항 중 "업무를 수행하는"을 "업무에 종사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업무를 수행하는"을 "업무에 종 사하는"으로 한다.

②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.

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8조의4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.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·대비·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

제79조제7호 중 "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"을 "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는"으로 한다.

제80조제2호 중 "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"을 "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9의2. "안전문화활동"이란 안전	9의2
교육, 안전훈련, <u>홍보</u> 등을	<u>홍</u> 보, 사고 예
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	<u>방 신고 장려</u>
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	
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	
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	
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	
한 활동을 말한다.	.
9의3. ~ 13. (생 략)	9의3. ~ 13.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030호 재난 및	법률 제20030호 재난 및
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	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제25조의4(재난관리책임기관의	제25조의4(재난관리책임기관의
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재	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
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	
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	
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	
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	
여야 한다.	
1. ~ 7의2. (생 략)	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의3.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
	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(「개

8. (생략)

② ~ ⑧ (생 략)

- 제55조(재난대비능력 보강) ① 제55조(재난대비능력 보강) ① (생 략)
 -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 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 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 고,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 여야 한다.
 - ③ ~ ⑥ (생 략) <신 설>

인정보 보호법 1 제2조제7호 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 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의 설치 • 운영

- 8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- (현행과 같음)
 - -----긴급구조현장지휘 대 -----
 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 제66조의13(안전 신고) ① 누구 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험 요인 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 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)에 신고(이하 "안전신

제9장 보칙 제66조의13 (생략)

제71조(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 제71조(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 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) ① ~ ④ (생략) <신 설>

고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간편하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 도록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 축・운영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 포털의 구 축 · 운영을 위한 제도적 · 기술 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장 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장 보칙

제66조의14 (현행 제66조의13과 같음)

- 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 -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연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 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

⑤ (생략)

제74조의2(재난관리정보의 공동 이용) ①·② (생 략)

③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원기관 또 지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(생 략)

제74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

① 행정안전부장관(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제16조제1항에 따른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.

<u>서는 아니 된다.</u>	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	
제74조의2(재난관리정보의 공동	=
이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
③	_
	-
	_
	-
	_
	_
<u></u> 다른	<u>-</u>
	-
권한 없이 제공하는	_
④ (현행과 같음)	
제74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
①	_
	_
	_
	_
	-
	_
	-
	-
	-
	_

의 예방 · 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 난으로 인하여 생명・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 •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 려되는 사람(이하 "재난피해자 등"이라 한다)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 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 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, 그 밖의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 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·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
 - 가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

· 1. (현행과 같음)		
2		
가		
<u>영상</u>		
정보처리기기(이하 "고정		

여 수집된 정보

나. ~ 라. (생 략) ② ~ ⑩ (생 략) <u><신 설></u> 형 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한다)----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74조의5(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을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(이하 "통합관제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공기관(「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이 개별적으로 설치・ 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 고 예방・대비・대응을 위하여 연계・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 다.
- ③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 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 고,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

- 제76조의4(재난안전의무보험 종 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를 포함한다)는 업무상 알게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⑤ (생략)
- 제78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·단체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

<u> </u>	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	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	제센
터의 설치・운영에 필요한	: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76조의4(재난안전의무보험	종
합정보시스템의 구축・	운영
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	
다른 사	람이
이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	공하
<u> </u>	
⑤ (현행과 같음)	
제78조의2(벌칙 적용 시의	공무
원 의제) ①	
업무에	종사
하는	

아 하다

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 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.

<신 설>

- ②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 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78조의4(벌칙) 제74조의3제5항 제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·대비
 ·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
 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
 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
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은
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
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
공무원으로 본다.
<u>③</u>
<u>업무에 종사하</u>
<u> </u>
78조의4(벌칙)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
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
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
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

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

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는 등

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

2.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

재난 예방 · 대비 · 대응 이외

- 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삭 제
 - 2. ~ 6. (생략)
 - 7.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 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
- 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제7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 보를 누설하거나 <u>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 공하는</u> 등 부당한 목적으로

<u>의 목</u>	적으로 정보를 사용하
거나	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
해당	정보를 파기하지 아니
한 자	
	칙)
	•
o	/처케키 기·O·V
	(현행과 같음)
7	
	<u>다른 사람이 이용</u>
<u>하도독</u>	· 권한 없이 제공하는-
]80조(벌	칙)
1. (현행	과 같음)
2	
	<u>다른 사람이</u>
이용히	도록 권한 없이 제공
하는	

사용한 자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	-
--	---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의 결과

O 행정안전부 '안전신고 통합 포털'을 통한 계절별 집중신고제 운영, 신고분야 확대,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으로 안전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, 이에 향후 5년간 총 25,84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(단위: 백만원)

十 是	연평균
○ 안전신고 포털 2,523 2,385 2,485 3,277 3,477 14,147	2,829
지출 ○홍보·포상 40 40 40 40 200	40
○ 연구개발 1,500 2,500 2,800 2,500 2,200 11,500	2,300
소계(A) 4,063 4,925 5,325 5,817 5,717 25,847	5,169
수입	
<u>소계(B)</u> △	
총 비용(A-B) 4,063 4,925 5,325 5,817 5,717 25,847	5,169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
1	안 제3조(정의) 제9호의2	○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함	
2	안 제25조의4 (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의 재난예 방조치 등 제1항	○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함	
3	안 제74조의5 (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)	 ○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・운영 근거를 마련함 ○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의 재난관리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 	
4	안 제66조의13 (안전 신고)	○ 안전신고 통합 포털 구축·운영 ○ 안전신고 통합 포털의 구축 운영을 위한 제도적·기술적 체계 마련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조(정의) 제9호의2	부	○3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5조의4 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제1항	부	○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기설치·운영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
3	안 제74조의5(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)	부	○ 통합관제센터는 전체 지자체에서 기구축*・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*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221개소 구축지원 완료 (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('10년^~20년), 총 2,500억원(국비보조율: 서울 30%, 그 외 50%)
4	안제66조의13 제2항, 제3항 (안전 신고)	여	-
5	안제66조의13 제1항, 제4항 (안전 신고)	부	○3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안전신고 분야가 다양해 처리기관별 기술적 비용 추계가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전신고 분야가 다양해 처리기관별(중앙부처,지자체,공공기관 등) 기술적 비용 추계 불가
- 행정안전부가 안전신고 통합 포털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(운영비·기능 보강·인공 지능 서비스 개발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·포상금)에 한정하여 산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안전신고 통합 포털 운영·보강·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홍보·포상) 25,847백
 - = 1 11,147백 (안전신고 통합 포털·운영 및 현장점검·민관협력) + ② 3,000백(안전신고 통합 포털 기능 보강 및 증설) + ③ 11,500백(인공지능 기반 안전신고 통합 포털 서비스 개발) + ④ 75백 (안전신고 통합 포털 홍보) + ⑤ 125백(우수 안전신고 포상)

Ⅳ. 부대의견

O 별도 없음

V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•국장
이재훈	이경자	지만석	박명균
황정미	박병호	정재용	이세영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(총괄) 김동희	044-205-4124	dong28@korea.kr
이경자	044-205-4223	mskoala@korea.kr
박병호	044-205-4469	bhbark@korea.kr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○ 행정안전부 '안전신고 통합 포털' 구축·운영에 따른 비용은 조세수입·세외수입 등으로 조달

<항목별 재원조달방안>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합 계
○조세수입·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·차입	4,063	4,925	5,325	5,817	5,717	25,847
○회계·기금 간 전입	-	-	-	-	-	-
○기존 예산·기금의 항목 간 조정	-	-	-	-	-	-
0기타	-	-	-	-	-	-
<합 계>	4,063	4,925	5,325	5,817	5,717	25,847

Ⅱ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○ 행정안전부의 '안전신고 통합 포털' 구축·운영에 따라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예산 총 25,847백만원은 중앙정부 일반회계 등을 활용 조달

<부문별 재원조달방안>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합 계
□ 중앙정부	4,063	4,925	5,325	5,817	5,717	25,847

ㅇ 일반회계	4,063	4,925	5,325	5,817	5,717	25,847
ㅇ 특별회계	-	-	-	-	-	-
ㅇ 기금	-	-	-	-	-	-
□ 지방자치단체	-	-	-	-	-	-
ㅇ 일반회계	-	-	-	-	-	-
ㅇ 특별회계	-	-	-	-	-	-
ㅇ 기금	-	-	-	-	-	-
□ 기타	-	-	-	-	-	-
< 합 계 >	4,063	4,925	5,325	5,817	5,717	25,847

Ⅲ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1.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O 중앙정부의 세입 여건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나결	예정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2.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O	해당사항	없음				

3. 기타 재원조달 방안

O 해당사항 없음			

Ⅳ. 부대의견

0 13 = 010			
O 별도 없음			

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		해당사항 없음

Ⅵ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・국장
이재훈	이경자	지만석	박명균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(총괄) 김동희	044-205-4124	dong28@korea.kr
이경자	044-205-4223	mskoala@korea.kr